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09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정희용·고동진·김선교

박충권 • 박준태 • 유용원

최수진 · 김기현 · 김상훈

박덕흠 · 강명구 · 박정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·인가·승인·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, 환경보 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여, 신속한 협의 를 통한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 이에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을 시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재해·재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호 전단 중 "사업."을 "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3조제2항제4호 전단 중 "사업"을 "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
제23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	제23조(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)					
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					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					
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						
외한다.		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	4					
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						
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						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						
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「재난						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9조						
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						
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						
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						
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						
경부장관과 협의한 <u>사업.</u> 이	<u>사업</u> <후					
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	<u>단 삭제></u>					
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						
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						
요청하여야 한다.						
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	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					
상) ① (생 략)	상) ① (현행과 같음)					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②					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 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1.	~	3.	(현	행과	같-	음)		
4.								
_								
_								
-								
-								
-								
_								
-								
-								
-								
_						사	업	<후
1							<u>н</u>	
_	<u>단</u>	<u>47</u>	11/					